

멸종위기 야생생물 []수출 []반출 []수입 []반입 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① 상호(성명)		
	② 연락처		

수입자 (실수요자)	③ 상호(성명)	④ 수입국	⑤ 수입 목적(용도)
	⑥ 주소(시설 소재지) (연락처:)		

수출자	⑦ 상호(성명)	⑧ 수출국	
	⑨ 주소(시설 소재지) (연락처:)		

수송계획	⑩ 출발국 및 선적항 /	⑪ 출발예정일	20 . . .
	⑫ 도착국 및 도착항 /	⑬ 도착예정일	20 . . .
	⑭ 수송방법	⑮ 항공편 및 선박편명	

기타 관련 정보	⑯ 인공증식증명서 번호(해당하는 경우)	⑰ 발행국 및 기관명 /
	⑱ 원산지증명서 번호(해당하는 경우)	⑲ 발행국 및 기관명 /

수출입 표본정보	⑳ 학명	㉑ 멸종위기 등급	㉒ 형태	㉓ 수량		㉔ 식별번호 유무 (O, X)	㉕ HS코드	㉖ 단가
				허가서 수량	실제 수량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[]수출 []수입 []반출 []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
(지방환경청장)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(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·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전시에 관한 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질병의 진단·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,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⑤란에는 수입 목적(용도)을 적고, ⑥란에는 실수요자 주소 및 수입 대상 표본의 사육시설 주소를 적습니다.
2. ⑩란부터 ⑮란까지는 수송계획에 필요한 해당 표본의 운송 방법(항공/선박)과 항공편 및 선박편명을 적습니다.
3. ⑯란부터 ⑲란은 그 외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적습니다.
4. ㉓란에는 수입(반입)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출허가서상 수량과 실제 수입하는 수량을 각각 기입하고, 수출(반출)의 경우에는 실제 수량 란에 수출하려는 수량만을 기재합니다.
5. ㉔란에는 개체에 부여된 식별번호가 있는지를 O, X로 표기하고, 개체별 식별번호를 별지로 제출합니다.
6.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